

임실군의회 김정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9월 16일

임실군의회의회장

1. 제정이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 육성 및 개발 이익 공유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소득 향상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과 용어의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 나. 사업자의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 개발이익 공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7조)
- 라. 군민참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마.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 신청 및 지정, 취소, 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1조)
- 바.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제출기한: 2025년 9월 21일까지
-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1) 주 소: (55927)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임실군의회(의회사무과)
 - 2) 전 화: 063-640-2883, 팩스 063-640-2699
 - 3) 전자우편: charity81@korea.kr

4. 제정안: 붙임

임실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주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 육성 및 개발 이익 공유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를 말한다.
3.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란 개발이익 공유를 위해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말한다.
4.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 전기를 생산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주민참여”란 임실군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이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식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6. “개발이익”이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 발생한 모든 이익을 말한다(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일체의 지원금을 포함한다).

7. “공공기여”란 발전사업자가 공적자원인 햇빛과 바람을 이용한 개발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발전사업 허가 등으로 인한 재산가치 상승분에 대하여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8.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발전사업을 통해 얻는 이익을 군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군민 참여 시책과 그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발전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군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야 하며, 요구사항과 의견을 사업계획에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협력) 군에서 발전사업을 추진하려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공유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군의 신·재생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1. 개발이익의 환원 및 공공기여
2. 일정비율 이상의 주민 채용
3. 신·재생에너지 관련 공익사업에의 참여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상생을 위한 활동

제5조(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심의위원회 설치)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임실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업자가 제출한 개발이익 공유 및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
2.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의 지정·변경·해제 여부
3.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인·허가 담당 부서장, 에너지 담당 부서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임실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회 의원

나. 대학이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 또는 투자한 연구기관 등에서 관련 분야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서 3년 이상 있었던 사람

다.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라. 임실군 소재 기관·단체 대표자 또는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마.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군민참여) ① 법 제27조의2에 따라 군민은 주식, 채권, 펀드 등을 통해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발전사업자는 군민참여로 인한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익 배분은 개인별로 지급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초 지급의 경우 발전소 최초 전력거래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수익과 관련한 기준·절차·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에 의거하여 군수가 정한다.

④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의 지정을 위한 군민참여 금액은 발전소 설립법인 등의 지분율의 30퍼센트 이상 또는 총사업비의 4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9조(개발이익 공유 발전소 지정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설비용량에 해당

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사업자는 개발이익 공유와 공공기여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이익공유발전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태양광 발전사업: 500킬로와트(kW) 이상(다만, 발전소 설치 장소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한 동일사업자 등의 다른 발전소들을 합산한 용량으로 본다)

2. 풍력 발전사업: 3,000킬로와트(kW) 이상

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발전소 인접지역 주민 우대를 위한 거리별 가중치

2. 주민등록 거주 기간에 따른 지급 기준

3. 그 밖에 개발이익 공유 및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③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 지정 신청, 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개발이익 공유 발전소의 지정) ①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로 지정된 발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발전소의 명칭

2. 위치 및 면적

3. 발전사업 개요(용량 및 규모, 예상 발전량, 계통연계방법 등)

4. 개발이익 공유 및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

5. 발전사업 종료 후 원상복구 계획

② 군수는 제1항의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에 대하여 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통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개발이익 공유 발전소의 지정 취소) ① 군수는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사업 개시를 하지 않은 경우
2. 「전기사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허가의 취소 등으로 사업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허위·거짓 서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 지정을 취소한 경우 발전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세부사항) 그 밖에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 임실군의회 김정흠 의원

관련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4조(시책과 장려 등) ①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기업체 등의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장려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①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식으로 해당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출자하는 방식
2.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방식

②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제12조의7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공급인증서 중 제1항에 따른 주민 참여로 인한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수익과 관련한 기준·절차·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제7조의2(주민참여사업의 추가 가중치 부여) ① 공급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주민이 참여하는 경우로서 이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별표2의 비고 제16호에 따라 발전사업자에게 주민참여 비율별로 추가 가중치를 부여한다.

②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주민참여를 할 때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 비율 산정시 고려되어 추가 가중치 수익을 배분받는 주민(이하 “참여주민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참여주민등의 자격 입증 방법은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한다.

1. 별표2의2에 따른 지역에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신청일로부터 직전 1년 이상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2. 태양광발전사업 또는 육상풍력발전사업의 경우 별표2의3에 따른 인접지역에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신청일로부터 직전 3년 이상 농업 또는 축산업에

중대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로서 농업 또는 축산업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

3.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여 이익을 공유받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며,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자로만 구성된 협동조합, 유한회사 등 법인 (제7조의 3제2항 본문에 따른 사유로 협동조합, 유한회사 등 법인의 구성원 전부 또는 일부가 이 항 제1호부터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로서 제7조의3제2항 각호의 기한 내에 해당 구성원을 제척하는 경우에는 이 호의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본다.)

4. 해상풍력발전사업의 경우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로 인하여 어업권 등 관련법에 따라 해당 해역에서 피해보상의 대상이 되는 어업인 (조합, 어촌계 등 유관단체를 통해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참여주민등은 하나의 세대(세대의 해석에 대해서는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한다)에서 2인까지 참여할 수 있고 1인당 참여금액은 아래 각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이때 발전사업자는 참여주민등과 협의를 거쳐 발전사업에 따른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이 항 전단에 따른 기준 내에서 참여주민등 간의 투자금 기준에 차등을 둘 수 있다.

1. 총 주민참여금액의 10퍼센트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제2항제1호의 자 중 제4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제2항제3호의 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1천만원

나. 제4항제1호의 자 및 제2항제2호의 자 (제2항제3호의 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3천만원

다. 제2항제4호의 자 : 4천만원

④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주민등(이하 “인접주민등“이라 한다)의 총 주민참여금액은 전체 참여주민등의 총 주민참여금액 대비 30%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인접주민등의 총 주민참여금액이 전체 참여주민등의 총 주민참여금액 대비 30퍼센트 미만일 경우에는 별표2 비고 제16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달하는 비율만큼 주민참여에 따른 가중치를 삭감하여 부여한다.

1. 별표2의3에 따른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제2항제3호의 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제2항제3호의 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태양광발전사업 또는 육상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한다)